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육비 채무자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
■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11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양육비 채무자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주요 내용과 최근의 개정 사항	4
다. 검토의견	9
라. 관계 기관 의견	15

I. 개요

1. 주호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71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주호영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7. 24.
- (3) 회 부 일 : 2025. 7.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법」의 유사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양육비 채무자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그 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 ----- --. 다만,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채권이 성립한 경우(이 법 시행 당시 수급권자에게 양육 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나.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주요 내용과 최근의 개정 사항

□ 2018년 7월 헌법재판소는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를 금지한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1항¹⁾(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제32조제1항) 본문(이하 “압류금지조항”이라 한다)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압류를 제한한 같은 조 제2항(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제32조제2항, 이하 “압류제한조항”이라 한다)²⁾이 양육비 채권자³⁾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였는데,⁴⁾

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구법 조항에 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채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선례(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401등 결정) 이후 압류금지조항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선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례와

1)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제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제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압류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활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6헌마260 결정.

마찬가지로 압류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각결정하였음.

- 2000년 3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뒤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채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하였음.⁵⁾

□ 다만,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⁶⁾에 이르지 못한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에 따른 것으로,

나머지 재판관 5인은 압류금지조항이 수급권자 본인과 그가 자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의 생활만을 보호하고, 양육비 지급의 대상인 자녀의 생활보호 목적은 도외시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압류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채권과 달리 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지 아니하며,

자녀의 양육을 보호하거나 양육비이행을 강제하는 다른 법률상의 방법이 제도적·실질적으로 충분하다면 압류금지조항으로 인한 양육비채권자인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은 완화될 수 있으나, 양육비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가사소송법」이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5)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401등 결정.

6)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제도들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한부모 실태조사(2015)’ 결과에 따르면 정기금으로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약 15%에 불과하여 실제 양육비이행 실태도 상당히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에서도 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압류를 전액 금지하게 되면 채권자의 희생으로 채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으며,

양육비채권이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집행채권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채권의 종류에 따라 입법자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채권을 정하여 압류금지의 예외를 허용하는 등 압류금지조항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참고로, 압류제한조항은 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그 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6호)이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7. 23.)에서 가결되어 법률 제21026호로 공포(2025. 8. 14.)되었고,

같은 취지에서 주호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2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14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호)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법률 제21026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법률 제21026호 (2025. 8. 14. 공포 2025. 11. 15. 시행)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 -----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신 설>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신 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현행	법률 제21026호 (2025. 8. 14. 공포 2025. 11. 15. 시행)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채권이 성립한 경우(이 법 시행 당시 수급권자에게 양육 의무가 있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 검토의견

-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⁷⁾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행복추구권과 혼인 및 가족생활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및 제36조제1항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7조제1항을 통하여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으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제34조제1항)하면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제34조제4항),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는 부모 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과 제라 할 수 있음.⁸⁾⁹⁾

- 이에 따라 2014년 3월 법률 제12532호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공포되어 이듬해인 2015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에서는 부모 또는 모가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8)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9헌마168 전원재판부 결정.

9)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국가는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면서,

비양육부·모가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도록 정함으로써,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금전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음.¹⁰⁾

- 참고로,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 명령 등을 통하여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

□ 그런데, 현행법¹²⁾에서는 이 법에 따른 수급권 일체가 압류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가 양육비 채무자¹³⁾로서 그 채무를

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①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지급하여야 한다.

1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12)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그 수급권을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채권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행법에서는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를 지역가입자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¹⁴⁾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등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연금액¹⁵⁾’이 기본연금액에 더하여 지급되도록 하고,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녀 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¹⁶⁾ 등이 지급되도록 규정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가.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 다. 삭제 <2016. 5. 29.>
 -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5) 「국민연금법」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유지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연 10만원

16)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

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에도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그가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조항 중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중 해당 조항이 양육비 지급 대상인 자녀의 생활보호 목적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은 국민연금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 제58조제1항에 대하여도 유효하다고 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제4조),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될 수 없고(제12조) 이를 제한·정지하더라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3조제2항),¹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8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압류할

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7)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 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참고로, 사회보장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1714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714호)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 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 ----- ----- ----- ----- . 다만, 사회보장수급 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u>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단서 생략)

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는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와 안 제58조제1항은 각각 일반 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므로 안 제58조제1항과 같이 규정할 경우 급여채권 전액의 압류가 가능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압류금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2025년 8월 법률 제21026호로 개정·공포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제3호²⁰⁾를 참고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2025년 7월 23일 개의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76호)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의 급여채권 압류가 가능하도록 수정되었음.

19)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에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20) 법률 제21026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5. 8. 14. 공포 2025. 11. 15. 시행>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개인의 양육책임 이행 의무와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국민연금 수급권은 노령이나 사망 등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취지를 달성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급권이 예외적으로 압류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만,²¹⁾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수급권이 담보·채납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일체 두지 아니하였고,

21)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군인연금법」

제18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납처분을 하는 경우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별정우체국법」

제31조(권리의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채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015년에 ‘급여수급전용계좌’를 법에 명시하여 급여액 및 관련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면서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만 지급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개인의 채무 이행 간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²²⁾ 양육비채권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22) 「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58조(수급권 보호)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급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